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관리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		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국	도	기	지	교	
3000	경제개발비	62,384,891	58,577,998	3,806,893	[국 [양	617,266 0	도 기	3,189,627 0	지 교	0 0
3100	농수산개발비	62,384,891	58,577,998	3,806,893	[국 [양	617,266 0	도 기	3,189,627 0	지 교	0 0
3120	축수산진흥	62,384,891	58,577,998	3,806,893	[국 [양	617,266 0	도 기	3,189,627 0	지 교	0 0
3121	축산관리	27,616,531	25,461,765	2,154,766	[국 [양	552,266 0	도 기	1,602,500 0	지 교	0 0
200	사업예산	27,507,531	25,352,765	2,154,766	[국 [양	552,266 0	도 기	1,602,500 0	지 교	0 0
210	보조사업	18,037,661	17,485,395	552,266	[국 [양	552,266 0	도 기	0 0	지 교	0 0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5,020,616	4,468,350	552,266						
		5,020,616	4,468,350	552,266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친환경 축산직불제			9,360,440원x59호 =		552,266 (국) 552,266
220	자체사업	9,469,870	7,867,370	1,602,500			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1)축산관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6 재료비	400,000	300,000	100,000	○소부루세라병 예방긴급방역 = 100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7,142,000	5,642,000	1,500,000	
		6,844,000	5,436,000	1,408,000	01 시설비 ○축산시험장 신축이전 = 1,408,000
		285,350	196,800	88,550	02 감리비 ○축산시험장 신축이전 = 88,550
		12,650	9,200	3,450	03 시설부대비 ○축산시험장 신축이전 = 3,450
	405 자산취득비	2,500	0	2,500	
		2,500	0	2,5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가축방역약품 보관 냉장고 = 2,500
3122 축산위생관리		5,716,707	5,251,667	465,04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축산위생관리 세세항:(110)인건비 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100 경상예산	4,176,411	4,151,771	24,640	
	110 인건비	2,718,417	2,693,777	24,640	
	101 인건비	2,718,417	2,693,777	24,640	
		157,032	132,392	24,640	04 일용인부임 ○일용인부 퇴직금 = 24,640
	200 사업예산	1,540,296	1,099,896	440,400	
	220 자체사업	562,249	121,849	440,4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79,300	25,000	354,300	
		375,000	25,000	350,000	01 시설비 ○숙소신축 320,000,000원x1동 = 320,000 ○전력증설 20,000,000원x1식 = 20,000 ○사무실개조 10,000,000원x1식 = 10,000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2)축산위생관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4,300	0	4,300	03 시설부대비 ○숙소신축 = 2,000 ○광우병 검사시설 = 2,300
	405 자산취득비	94,000	7,900	86,100	
		94,000	7,900	86,1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직원숙소 집기구입 = 10,000 ○광우병검사장비 (호모게나이저외 10종) = 66,100 ○초저온냉동고 = 10,000
3123	축산위생지소운영	874,643	815,143	59,500	
200	사업예산	599,378	539,878	59,500	
220	자체사업	297,829	238,329	59,5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27,900	68,400	59,500	
		127,900	68,400	59,500	01 시설비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3)축산위생지소운영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○소독장비 및 축대 개·보수 (아산지소) = 10,000 ○별관옥상방수 및 내부수리 (아산지소) = 10,000 ○청사, 화장실간 연결 차양공사 (부여지소) = 3,500 ○키폰전화시설 교체 (부여지소) = 7,000 ○청사담장 보수공사 (통합지소) = 17,000 ○청사주변 배수로 설치공사 (통합지소) = 12,000
	3124 축산시험관리	521,927	479,640	42,287	
	100 경상예산	186,158	179,408	6,750	
	120 경상적경비	147,781	141,031	6,750	
	201 일반운영비	130,365	123,615	6,750	
		130,365	123,615	6,750	01 일반운영비 ○당직수당 = 6,750
	200 사업예산	335,769	300,232	35,537	
	220 자체사업	335,769	300,232	35,537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4)축산시험관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206 재료비	282,759	247,222	35,537	○농후사료대 인상분 (23.4%) 187,808,000원 - 152,271,000원 = 35,537
3125 해양수산물관리		26,778,222	25,738,422	1,039,800	[국 65,000 도 974,800 지 0] [양 0 기 0 교 0]
200 사업예산		26,546,787	25,506,987	1,039,800	[국 65,000 도 974,800 지 0] [양 0 기 0 교 0]
210 보조사업		21,362,777	21,282,777	80,000	[국 65,000 도 15,000 지 0] [양 0 기 0 교 0]
	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	8,168,578	8,088,578	80,000	
		7,656,578	7,576,578	8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자율관리어업 100,000,000원x65% = 65,000 (국) 50,000 (도) 15,000 ○패류살포양식 (전복) (180,000,000원x50%) - 75,000,000원 = 15,000 (국) 15,000
220 자체사업		5,184,010	4,224,210	959,8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5)해양수산물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308 자치단체등 이전	136,240	121,240	15,000	
		136,240	121,240	15,0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○수산 경영인 대회지원 30,000,000원x50% = 15,000
	401 시설비및부 대비	3,665,846	2,821,046	844,800	
		3,646,476	2,801,676	844,800	01 시설비 ○지방어항실시설계 용역 844,800 · 국비지원대상 어항 (4개소) 19,000,000,000원x2.45% = 465,500 · 도자체사업대상 어항 (8개소) 11,400,000,000원x2.45% = 279,300 · 고대도 선착장 보수보강 250,000,000원 - 200,000,000원 = 50,000 · 장고도 선착장 보수보강 250,000,000원 - 200,000,000원 = 50,000
	403 자치단체등	1,345,000	1,245,000	100,000	

장:(30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20)축수산진흥 세항:(3125)해양수산물관리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금회 추경액	산출 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자본이전				
		1,340,000	1,240,000	10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○보령 오천 원산도리 소록도 선착장 보수 200,000,000원x50% = 100,000
3126	내수면개발시험	876,861	831,361	45,500	
200	사업예산	248,627	203,127	45,500	
220	자체사업	205,770	160,270	45,500	
	401 시설비및부 대비	109,750	72,250	37,500	
		109,750	72,250	37,500	01 시설비 ○울타리보수공사 32,750,000원 - 17,250,000원 = 15,500 ○정화장 제수변 설치 4,000,000원x3개 = 12,000 ○청사 피뢰침 설치공사 = 5,000 ○시험사육조 단자점속함설치 250,000원x20개소 = 5,000
	405 자산취득비	40,800	32,800	8,000	

장:(300)경제개발비 관:(3100)농수산물개발비 항:(3120)축수산물진흥 세항:(3126)내수면개발시험 세세항:(220)자체사업 [세출]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기 정 예 산 액	금 회 추 경 액	산 출 기 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40,800	32,800	8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에어콘 2,500,000원x2대 = 5,000 ○어류사료 급이용 냉동고 = 3,000
세 출 합 계		62,384,891	58,577,998	3,806,893	